

1. 개정이유

현행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각 지자체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 접근성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음. 이에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심의 주요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을 통하여 심의 주요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.

나. 별지 제2호서식에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의 근거와 작성방법을 명시하도록 함.

다. 기타 오자 및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을 바로잡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 제4조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의5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호바목 중 “재심의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”를 “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”로 한다. (안 8, 별지 제2호서식) (안 2, 5, 7, 9)

제5호 중 “기한이 초과(접수일로부터”를 “기한(접수일로부터”로, 같은 호 중 “상정)되지”를 “상정)을 초과하지”로 한다.

제7호 중 “받고자하는”을 “받고자 하는”으로 한다.

제8호 중 심의절차의 “심의결과 공개(홈페이지)”를 “심의결과 등록 및 공개(건축행정시스템 및 홈페이지)”로 한다.

제9호나목 중 “건축사가”를 “건축사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”을 “주요결과는”으로, 같은 목 중 “따른다”를 “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,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7.5 심의사항에 「건축법」 제5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적용완화 적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7.3에서 정한 제출도서 외에 적용완화를 받고자하는 내용 관련 자료나 도서만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8. 안전 상정 등 심의절차
8.1. 심의 안전 상정 등 심의절차는 다음에 준하여 운용한다.
(붙임 1과 같음)

9. 심의의결 방법 등
나. 조건부 의결 : 상정 안전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다. (생략)

라. 부결 : 상정 안전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. 단,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.

9.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 [별지 제2호]에 따른다.

----- 받
고자 하는 -----

--.

8. -----
8.1. -----
-----.
(붙임 2와 같음)

9. -----
나. -----

----- 건축사-----

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-----

-----.

----- 주요결과
는 -----
----- 따라 홈
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
며,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

	<u>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.</u>
[별지 제2호서식] (붙임 3과 같음)	[별지 제2호서식] (붙임 4와 같음)

(붙임 1. 제8호 개정 관련(현행))

구분	절차 등	비고
① 심의 신청 신청인→ 허가권자	⇨ ○ 심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	개최 25일전
② 심의 건 검토 허가권자	⇨ ○ 관련부서, 기관 협의 - 관계규정 검토 - 협의결과 민원인 통보 - 보완사항 보완	개최 25~15일전
③ 심의 상정 허가권자→ 위원회	⇨ ○ 상정 안건 작성 ○ 내부 결재 (회의안건 및 위원 선정등) ○ 개최계획 알림 - 위원 및 신청인 등 ○ 위원에게 안건배부 - 안건은 개최 7일 전 송부하여 검토 ※ 필요시 위원 사전검토 의견 제출	개최 12일전 개최 12일전 개최 10일전 개최 7일전 개최 2일전
④ 위원회 개최 허가권자, 위원회	⇨ ○ 안건개요 보고 - 당해업무 담당 ○ 위원회 개최 - 위원, 건축주 및 설계자 등 참석 - 인건 설명 : 당해업무 담당, 건축주, 설계자 등 ○ 위원회 회의록 작성	개최당일
⑤ 개최 결과 정리 허가권자	⇨ ○ 개최결과 정리 및 보고(내부보고) ○ 심의결과 통보(문서시행) ○ 심의결과 공개(홈페이지)	개최후 7일내 개최후 10일내

(붙임 2. 제8호 개정 관련(개정안))

구 분	절 차 등	비 고
① 심의 신청 신청인→ 허가권자	⇨ ○ 심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	개최 25일전
▼		
② 심의 건 검토 허가권자	⇨ ○ 관련부서, 기관 협의 - 관계규정 검토 - 협의결과 민원인 통보 - 보완사항 보완	개최 25~15일전
▼		
③ 심의 상정 허가권자→ 위원회	⇨ ○ 상정 안건 작성 ○ 내부 결재 (회의안건 및 위원 선정등) ○ 개최계획 알림 - 위원 및 신청인 등 ○ 위원에게 안건배부 · 안건은 개최 7일 전 송부하여 검토 ※ 필요시 위원 사전검토 의견 제출	개최 12일전 개최 12일전 개최 10일전 개최 7일전 개최 2일전
▼		
④ 위원회 개최 허가권자, 위원회	⇨ ○ 안건개요 보고 - 당해업무 담당 ○ 위원회 개최 - 위원, 건축주 및 설계자 등 참석 - 안건 설명 : 당해업무 담당, 건축주, 설계자 등 ○ 위원회 회의록 작성	개최당일
▼		
⑤ 개최 결과 정리 허가권자	⇨ ○ 개최결과 정리 및 보고(내부보고) ○ 심의결과 통보(문서시행) ○ 심의결과 <u>등록 및 공개(건축행정시스템 및 홈페이지)</u>	개최후 7일내 개최후 10일내

(붙임 3. 별지 제2호서식(현행))

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[별지 제2호서식]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			심의일자	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※ 여러 명인 경우 ○○○외 ○명으로 적습니다.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					
	지번		관련지번			
	대지면적 ㎡	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㎡		건폐율 %		층수 지하 : 층/ 지상 : 층	
	주용도		구조		건축물 동수 동	
	최고높이 m		용적률 %		연면적 합계 ㎡	
심의내용	구 분		주요 심의결과			
	()분야					
	()분야					
	()분야					
	()분야		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붙임 4. 별지 제2호서식(개정안))

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[별지 제2호서식]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·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O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			심의일자	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※ 여러 명인 경우 ○○○외 ○명으로 적습니다.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					
	지번		관련지번			
	대지면적 m ²	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m ²		건폐율 %		층수 지하 : 층/ 지상 : 층	
	주용도		구조		건축물 동수 동	
	최고높이 m		용적률 %		연면적 합계 m ²	
구 분	주요 심의 내용					
()분야	(김○○) (이○○) (박○○)					
()분야						
()분야						
()분야			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	
근거조문						
건축위원회 심의기준	<p>9.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,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 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.</p> <p>가. 원안의결 :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. 조건부 의결 :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. 재검토 의결 :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. 부결 :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. 단, 2.3 가 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.</p> <p>9.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[별지 제2호]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,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p>					
작성방법						
<p>1. 심의 결과는 “원안의결”, “조건부 의결”, “재검토 의결” 또는 “부결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</p> <p>2. “주요 심의 의견” 란은 개인 식별(이름, 소속 등)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(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, 乙,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)</p>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